

선수위원회 규정

(사)대한트라이애슬론연맹

선수위원회 규정

제 정 2010. 1. 30
개 정 2013. 9. 1
개 정 2014. 12. 13

제 1 조 (설치근거 및 명칭)

대한트라이애슬론연맹(이하 “본 연맹”라 한다) 그리고 대한체육회(이하 “체육회”라 한다)라 칭한다. 정관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 운영하며, 그 명칭은 선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라 칭한다.

제 2 조 (목적)

위원회는 선수 및 지도자의 권익을 보호, 증진하여 건전한 운동 환경을 조성하고 페어플레이 정신 함양을 통해 존경받는 체육인상을 확립함으로써 올림픽 정신의 보급·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14)

제 3 조 (적용범위)

- ① 본 연맹 산하 시도연맹 및 전국연맹체에 등록된 각종 운동경기부(팀)의 선수 및 지도자(코치)에 적용된다.
- ② 본 연맹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수의 권익침해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.

제 4 조 (기능)

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 심의한다.

1. 올림픽대회 및 각종 국제대회 관련, 페어플레이 정신 함양 및 올림픽 정신의 보급·확산
2. 선수 및 지도자 권익 보호/증진 및 보급에 관한 사항
3. 선수 및 지도자 권익 침해(폭력·성폭력행위)한 자에 대한 조사 및 구제에 관한 사항(개정 2014)
4. 선수등록 업무 및 선수등록 규정 심의
5. 은퇴선수 지원사업 계획 및 운영에 대한 심의
6. 기타 위원회 설립 목적과 관련된 사항
7. 위 각 호와 관련되는 부대사업

제 5 조 (구성)

-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1. 위원장 1인
 2. 부위원장 1~3인
 3. 위원 11인 이내(위원장, 부위원장 포함)
- ②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, 회장이 사무국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.
- ③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법률, 인권 분야 등 전문가를 선임하여야 한다. (신설 2014)
-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하에 소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⑤ 위원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 6 조 (위원의 위촉)

- ① 위원장은 선수출신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한 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.
- ②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.
- ③ 위원은 위원회 사업과 관련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자로서 회장이 위촉한다.

제 7 조 (위원의 직무)

-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.
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회장이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.

제 8 조 (조사대상)

-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대한 연맹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.
-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 9 조 (위원의 해촉)

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.

1.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
2. 위원이 질병, 해외출장,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3.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제 10 조 (회의 소집)

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.

제 11 조 (의결정족수)

위원회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.

제 12 조 (긴급한 업무처리)

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.

제 13 조 (제척 및 회피)

위원은 본인,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제 14 조 (스포츠인권익센터 설치)

- ① 본 연맹은 은퇴선수 지원 및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스포츠인권익센터(이하“권익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.
- ② 본 연맹은 해당 단체 홈페이지 등에 권익센터의 위치(인터넷주소), 전화번호, 담당자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.

제 15 조 (조사대상)

- ① 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실명으로 체육회, 시·도체육회, 연맹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.(개정 2014)
- ② 누구든지 스포츠인권 침해를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. (신설 2013.)
- ③ 제1항에 따라 진정된 사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는 즉시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. 다만 진정이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와 진정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근거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.
- ④ 위원회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선수 권익 침해(선수 폭력·성폭력행위)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조치할 수 있다.

제 16 조 (조사 및 구제절차)

- ① 선수 권익 침해에 대하여 본 연맹은 1차 조사기관 이며 대한체육회는 2차 조사기관이다.
- ② 2차 조사기관인 체육회에 신고 접수(또는 진정)된 사항이나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를 결정한 선수 권익침해 사안에 대하여 이송 받은 연맹은 이를 처리 한다.
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수 권익 침해가 중대하거나 긴급하게 조사·구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선수위원회의 위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체육회가 직접 조사·구제할 수 있다.(개정 2013)
- ④ 선수 권익 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기관은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.
 1. 본 연맹은 국가대표선수, 국가대표후보선수 및 본 연맹을 대표하여 참가하는 대회를 대비한 훈련 또는 대회 중 발생한 사안을 조사 구제한다.

2. 시·도연맹은 당해 연맹이 관장하고 있는 운동 경기부 소속 선수의 훈련 또는 대회 중 발생한 사안을 조사 구제한다.
3. 본 연맹과 시·도연맹 혹은 시·도체육회간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한체육회가 소관기관을 결정한다.
- ⑤ 체육회로부터 권익 침해 사안을 이송 받을 경우 접수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⑥ 본 연맹은 체육회에서 이송 받은 사안, 직접 신고 접수된 사안, 동 단체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기로 결정한 사안등 소관 귀익 침해 사안에 대하여 해당선수 및 지도자가 소속된 운동경기부의 소관기관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선수 격리 보호 등의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(개정 2014)
- ⑦ 위원회는 신고 접수된 선수 권익 침해에 대하여 접수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 조사 및 직접 소환조사 또는 위원회의 현지 실시 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조치하여야 한다.
- ⑧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.(개정 2014)

제 17 조 (징 계)

- ① 위원회는 신고 접수되거나 직권으로 조사한 사항에 대하여 그 사실이 인정될 경우 다음과 같이 징계 의결한다.
(개정 2013. 9.)
1. 폭력 행위를 한 선수 또는 지도자.
 - 가. 스포츠인권 침해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 : 6개월 미만의 자격정지 또는 경고
 - 나. 경미한 경우 : 6개월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
 - 다. 중대한 경우 : 3년 이상의 자격 정지 또는 영구제명
2. 삭제<2014.>
3. 강간,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행위를 한 선수 또는 지도자 : 영구제명
4. 삭제<2013. 9. >
5. 성추행, 성희롱 등 성과 관련된 범죄행위를 한 선수 또는 지도자
 - 가. 혐의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 : 1년 미만의 자격정지
 - 나. 경미한 경우 : 1년 이상 5년 미만의 자격정지
 - 다. 중대한 경우 : 5년 이상의 자격 정지 또는 영구제명
6. “삭제”<2014.>
7. 제1호와 제5호의 행위에 대해 2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의 2배 이상 가중처벌하며, 3회 적발된 자는 영구제명 한다.
8. 징계일 현재 선수·지도자등록이 되지 않았으나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가 확인이 된 자에 대해서는 선수·지도자 등록 시 이를 제한할 수 있다.
 - ② 징계의 효력은 위원회가 그 징계를 의결한 날로부터 발생한다.
 - ③ 위원회는 징계 확정 내용을 징계대상자 및 그 소속단체장에게 통지함은 물론 체육회와 징계 대상자 소속 가맹단체 또는 시·도체육회에 통지하여야 한다.
 - ④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는 징계대상자 또는 피해자는 징계를 의결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한 단체의 소관 위원회에 1차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 다만, 스포츠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다른 규정이나 관례에도 불구하고 재심기간에도 징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.

제 18 조 (재심청구)

- ① 제17조 제4항의 연맹과 시·도체육회의 1차 재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을 의결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본 연맹에 직접 2차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 다만, 본 연맹의 재심기간 중에도 시도연맹이 의결한 징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.
- ② 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조사 및 직접 소환 조사 또는 위원회의 현지 실시 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조치하여야 한다.
- ③ 위원회는 2차 재심결과를 당해 피해자(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), 징계대상자 및 징계대상자의 소속단체장, 소속 시·도체육회, 소속 가맹단체, 시·도교육청에 통보하여야 한다.(개정 2013. 9.)
- ④ 재심청구에 대한 체육회의 결정은 최종 결정이며, 그 효력은 결정한 날로부터 발생한다.

제 19 조 (선수위원회 설치 의무)

- ① 시·도연맹은 선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.
- ② 시·도연맹의 선수위원회 규정은 이 규정에 준용하여 해당 단체의 실정에 맞게 제정하여야 한다.

③ 시·도연맹의 선수위원회는 해당 단체의 등록 선수/지도자 자질 향상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 20 조(사후관리 및 행정처리) ① 본 연맹은 징계를 의결한 날로부터 1주 이내 체육회에 징계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. (신설 2013. 9.)

② 연맹은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결정사항을 선수·지도자 등록시스템에 반드시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(신설2013, 개정 2014)

제 21 조(비밀누설금지) 스포츠인권 향상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자·피해자 및 신고인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(신설 2013. 9.)

제22조(회의의 비공개) 위원회의 징계 등에 관한 회의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(신설 2013)

부 칙 (2010. 1. 3)

제 1 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

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선수보호위원회, 선수 자격심의위원회는 폐지되며 이 규정에 의한 선수위원회가 그 직무를 대신한다.

제 3 조 (선수등록규정에 대한 경과조치)

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선수등록 규정 제2장(선수자격심의위원회)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은 삭제되고 이 규정을 대체된다.

부 칙 (2013. 9. 1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사항) 제20조 제2항 의하여 본 연맹에서는 보유중인 과거 (성)폭력관련 징계실적을 체육회에 통보하여 선수·지도자 등록시스템에 등록되도록 하여야 한다.

부 칙 (2014. 12. 13)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경과조치) ① 이 개정규정 제5조제2항 제3호에 대해서는 이 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.